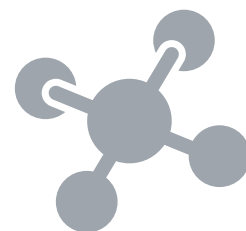




화학물질 확인제도 안내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안내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 확인제도란 ?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란?

- 원소 ·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지칭합니다.
예) 화학약품(불산, 페놀, 암모니아 등), 플라스틱 칩, 화학섬유, 고무, 잉크, 염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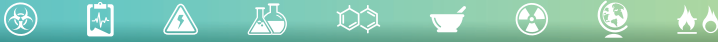
‘규제대상 화학물질’이란?

-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관리 중인 화학물질 그룹으로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지칭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하고자 하는자
- **제출시기** :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 **제출서류**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1호서식)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 ‘서식’, ‘작성요령’ 파일 다운로드 가능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민원지원팀) (☎ 02-3019-6731, 6744, 6712, 6707)
- **제출방법** : 온라인(<http://ols.kcma.or.kr>) 또는
우편 · 방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원지원팀)
※ 분실 우려로 인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 **제출 면제**
 -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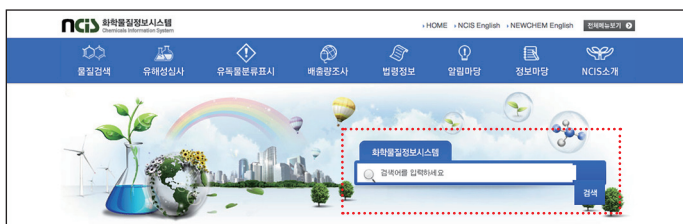


화학물질 제조·수입절차 흐름도



규제물질 여부 확인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http://ncis.nier.go.kr> 입력



→ 제품의 구성성분별 CAS No. 를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근거 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함)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서류의 기록·보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와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5년으로 변경



벌칙 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과태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혹은 관련서류의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은 1,000만원, 기록·보존의무 위반은 300만원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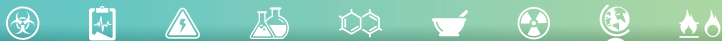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아래 사항 포함

〈신 설〉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화학물질 성분자료 확보

- **성분명세서** :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 한 경우
→ 구성성분의 CAS NO.와 함량(%)을 모두 기재하고, 함량합이 100%가 되어야함
※ CAS NO. : 화학물질 고유번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번호임
※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부터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확인 관련서류**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국내3자)가 성분명세서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 물질 함유여부 확인서류를 제공한 경우
※ 제조·수출자가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라도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되었을 시에는 그 성분 및 함량을 밝힌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를 요청하여야 함



2. 규제물질 여부 확인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 성분명세서, MSDS 등으로 모든 성분이 확인된 경우,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CAS NO.를 입력하여 규제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명세서 작성
- 확인 관련서류로 규제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한 경우, 확인내용으로 확인명세서 작성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

- 등기우편 · 방문
- 전자(<http://ols.kcma.or.kr>) : 법인 공인인증서 가입 (3일 정도 소요, 연회비납부)

* 확인명세서 작성시

- ▶ 확인내용에 모두 “없음” 일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하고, 관련서류 3년간 보존
- ▶ 확인내용 중 신규/유독/관찰/취급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물질별 “추가절차 반드시 이행”
- ☞ 모든 절차는 통관전까지 미이행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태료 또는 벌금형)



확인명세서 작성 예시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1. 31)

☐ 제조
☐ 수입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제조 (수입)자	① 상호 (명 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수입) 제품명세	⑥ 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 (수입)예정 량(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⑪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사: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확인 관련 서류 제공사	⑫ 상호 (명칭)			
	⑬ 주소	(전화번호:)		
	⑭ 담당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⑮ 확인 내용	구분	함유여부	있음	없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대상	☐	☐
		유해성심사면제대상	☐	
	유독물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관찰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취급제한·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⑯ 비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 수입

제조 (수입)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제조 또는 수입 체크 ☒

■ 제조자 :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 ①~⑤항목 기재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①~⑤항목 기재

⑥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세관
수입 신고서 (면장)의 "모델/규격명"(유통 되는
제품명) 기재

⑦ 수입의 경우에 한함. 제조의 경우 "-"표시

⑧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을 기재

⑨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모르는 경우 수입 대행
하는 관세사무소에 문의

⑩ 제품의 주요용도 기재

⑪ "⑮ 확인내용"을 확인한 방법
<주의> 성분명세서,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확인관
련서류 중 확인한 방법 하나를 체크 함.

잘못 작성한 예.1 : 중복선택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확인 관련 서류

(제공사 :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잘못 작성한 예.2 : 기재오류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확인 관련 서류

(제공사 :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잘못 작성한 예.3 : 미 기재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확인 관련 서류

(제공사 :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잘못 작성한 예.4 : 중복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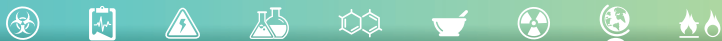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확인 관련 서류

(제공사 :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⑮ 확인내용

• 성분명세서 또는 확인관련서류에 따라 규제대상
화학물질 확인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No를 통해 확인(<http://ncis.nier.go.kr>)

○ 제조(수입)자 (서명 또는 인)
<주의> 담당자 서명 인정되지 않음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근거서류 예시

1 [성분명세서 예시]

① 제조(수출)자가 성분 및 함량을 모두 밝힌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QuRar 4040-a(제품명)

Chemical name	CAS No.	함량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styrene and 1,2-ethanediol	27881-32-9	3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23%

certified by :

Name :(Signature or Seal)
Name of Department :
DATE :

※ 비고 : 이 경우 함량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② 제조(수출)자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량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LSB-404052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nents.

Decanoic acid octyl ester	2306-92-5
Methylphenylsilane	766-08-5
1,2,4-Triazole-3-carboximide	3641-08-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Sincerely yours,

certified by :

Name :(Signature or Seal)
Name of Department :
DATE :

※ 비고

- 구성성분 중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 구성성분 중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밝혀야 함.

*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 정확한 함량 대신, **함량범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유독물 등 규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예) 수산화나트륨 < 5% (유독물이 아니므로 인정가능)

수산화나트륨 4~7%(유독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곤란)

2 [제조(수출)자 확인서 예시]

① 규제대상물질이 없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does not contain any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or Accident precaution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② 규제대상물질이 있는 경우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New Chemical			
Toxic Chemical			
Observational Chemical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or Accident precaution chemicals)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new chemicals, toxic chemicals, observational chemicals, restricted or prohibited chemical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regulated under the Toxic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Date :

Sincerely yours,

Name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규제대상물질 함유시 수입 절차를 알려주세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1항
- **제출대상** : 연간 신규화학물질을 100kg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자
- **제출기관**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 **제출서류** : 유해성심사 신청서(별지 5호 서식)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제2항
- **면제확인 대상물질(제품)**
 -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전량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 개선을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합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출서류**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4호 서식)

〈연간 수입량 100kg 산정방법 유의사항〉

◆ 연간 수입량이 100kg인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수입량(100kg) × 5% = 5kg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 **관련법규**
 - 유 독 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제1항
 - 관찰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제1항
- **신고대상** : 연간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100kg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자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출서류**
 - 유 독 물 : 유독물 수입 신고서(별지 12호 서식)
 - 관찰물질 :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서(별지 29호 서식)

〈연간 수입량 100kg 산정방법 유의사항〉

◆ 연간 수입량이 100kg인 제품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함유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수입신고 대상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
- **제출기관** :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제출서류**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31호 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일부 내용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Q & A (주요 질의 응답)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련

Q 규제대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일반 화학물질(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예. 모든 화학물질은 제조·수입의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Q 동일한 화학물질을 매년 수입하는 경우, 매년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아니요. 최초 수입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명, 구성성분 함량, 수입국, 제조자 등 기존 확인명세서 제출시와 일부라도 변경되면 확인명세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연구용시약 등 아주 적은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예. 모든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Q 컴퓨터, 완구, 정수기 등의 경우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나요?

! 상기 물품과 같이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고체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확인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액상 혼합물질, 고형이나 사용전 용융시켜 다른 모양을 가공하게 되는 과립형 플라스틱, 고무 등은 성상에 상관없이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Q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동 의약품 및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 수입관련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 예. 의약품의 원료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확인명세서 제출, 유해성심사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타사에서 이미 동일한 종류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협회로 제출한 경우라면 당사에서도 제출의무가 있나요?

! 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의 경우 납세의무자이므로 동일한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타사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입업체별로 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13. 2. 2. 이전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확인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

! 아니요. '13. 2. 2. 이전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또는 면제신청 관련

?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 신청서는 제조·수입시마다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 제조·수입물질, 조사·연구용 물질, 연간 10톤 이하 전량 수출용 물질의 경우 등은 동일물질이라도 제조·수입시 매번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수입이 가능 하나요?

! 아니오.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 결과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에 통관(수입)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세관에서는 통관이 가능하나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을 지라도 국·내외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험성이 없다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나요?

! 아니오. 모든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관련

?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는 매년 해야 하나요?

! 최초 1회만 신고하고 주요 변경사항(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신고한 수입예정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이 있는 경우에만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 신고된 제품명(상품명)이 아닌 새로운 제품(상품)인 경우에는 새로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유독물 등록,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관련

? 유독물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100킬로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예. 유독물 판매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업 허가과 수입허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의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아울러, 연간 60톤을 초과하여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용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처벌규정 및 담당기관 안내

④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위반행위	관련법조항	처분사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법 제9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심사 미이행	법 제10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 또는 사용중지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 또는 사용중지
유독물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19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영업 등록 미이행	법 제20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31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법 제33조제1항,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미이행	법 제34조제1항,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적보고 미제출	법 제45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류 기록보존 의무 위반	법 제46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업무별 담당기관 및 전화번호

구분	업무명	관할기관 및 연락처	처리기간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02)3019-6731, 6744, 6712, 6707	-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http://newchem.nier.go.kr) ☎ 032)560-7211~7218	60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newchem.nier.go.kr) ☎ 02)3019-6720, 6725, 6755	3일
유독물	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02)3019-6720, 6725, 6755	즉시
	영업등록	시·도지사 (시·군·구청 환경과)	10일(판매 5일)
	실적보고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02)3019-6712, 6731, 6744	-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02)3019-6720, 6725, 6755	즉시
	실적보고 (매년 3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02)3019-6712, 6731, 6744	-
	수입허가		즉시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http://www.me.go.kr/daegu) ☎ 053)230-6571	10일
	수출승인		90일
	실적보고 (매년 3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 02)3019-6712, 6731, 6744	-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일부 내용(업무별 담당기관, 과태료 등)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